

한화생명 상속연구소

THE WEALTH GUIDE

2025 Vol.11



Part.2 세무

규제 없는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 두바이



규제 없는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 두바이

한화생명 신은영 세무사

eyshin@hanwha.com

(작성일 : 2025.10.31)

Summary

- 두바이는 현재 암호화폐 수익과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특별한 규제 환경을 기반으로,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음.
- 한국은 2027년부터 암호화폐 투자수익에 과세가 본격화되지만, 두바이는 소득세·법인세·양도세가 모두 면제되는 0% 세율 체계를 유지하며, 배당·상속·증여 시에도 과세하지 않음.
- 두바이 세제 혜택을 온전히 적용 받기 위해서는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 로 인정받는 것이 필수이며, 한국-UAE 조세조약의 Tie-Breaker 규정을 통해 이중과세 여부가 최종 결정됨.

두바이의 투자 친화 환경 및 정책적 강점

1	암호화폐 친화적 세제 정책 및 투자 허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및 법인소득세 0% • 배당소득세 등 면제
2	VARA 중심의 독립 규제 환경 및 비즈니스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청(VARA) 라이선스, 샌드박스 체계
3	완전한 소유권 및 자본 이동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외국인 직접 소유 가능 • 해외 송금 제한 없음. 송금세 0% 적용
4	장기체류비자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리존 비자: 주요 프리존에 법인 설립시 장기 거주 가능 • 골든 비자: 고액투자자에게 10년 거주 보장 • 그린 비자: 소규모 투자자에 적합

1. 두바이의 암호화폐 친화적 세제 정책

- 두바이는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대부분의 세금을 사실상 면제하는 세계 유일의 암호 화폐 친화 국가로 평가받고 있음. 특히, **프리존(자유무역지대)에 설립된 법인과 개인은 암호화폐 거래·대여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 세금 부담이 없는 제도적 기반은 투자자와 기업이 최대 순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글로벌 핀테크 기업·디지털 자산 운용사·크립토펜드(Crypto Fund) 등 주요 사업체들이 두바이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이자, 두바이가 경쟁력 있는 글로벌 투자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함.

2. 두바이 VARA 중심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와 신속한 비즈니스 환경

- 두바이는 혁신적이고 신속한 규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2022년 설립된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청(VARA)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감독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VARA는 **암호화폐 거래소·디지털 자산 지갑·디파이(Defi)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적합한 라이선스 제도**를 마련하고,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과 신사업자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안전하게 시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또한, VARA는 글로벌 규제 표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 확인(KYC) 규정을 엄격히 시행**하고 있어, 두바이가 국제 사회에서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는 핵심 기반이 되고 있음.
- 아울러 **기업 설립·라이선스 취득·운영** 등에 관한 행정 절차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되어**, 신규 기업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고 운영을 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글로벌 거래소와 투자사가 두바이 프리존 내에서 단기간 내 규제 적합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3. 완전한 소유권과 자유로운 자본 이동

- **두바이 프리존은 100% 외국인 직접 소유권이 보장**되며, 투자자가 별도의 현지 파트너 없이 법인을 설립하고 경영권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음.
- 또한, 2021년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본토(Mainland)기업** 역시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100% 외국인 소유가 가능**해져, 투자자의 선택의 폭이 크게 넓어짐.
- 더불어 자본 이동의 완전한 자유를 인정하며, 수익·배당금에 대한 송금에 있어 세금과 규제가 없어 투자자는 「**송금세 0%+무제한 송금 +외환 규제의 부재**」라는 세 가지 조건 속에서 본국으로 자유롭게 자금을 이전할 수 있는 환경을 누릴 수 있음.

4. 장기체류 비자의 종류와 주요 혜택

- 투자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장기 체류 제도 또한 잘 정비되어 있어, 최대 10년까지 체류 가능한 아래 세 가지 유형의 장기비자를 운영하고 있음.

프리존 법인 소유주 비자	100% 외국인 법인 소유 가능, 법인세 등 각종 세금 면제, 비자 발급 후 UAE 내 운전면허 계좌 개설 가능, 유효기간 2~3년, 갱신 가능
골든 비자	부동산 또는 사업에 일정 규모 이상 고액 투자자에게 10년 거주를 보장 - 부동산 200만 AED(원화 약 7.8억), 비즈니스 500만 AED(원화 약 19.5억)
그린 비자	비교적 소규모 투자자 를 위한 실용적 대안으로 스타트업 또는 자영업자에게 적합한 형태

한국 vs 두바이 : 암호화폐 세제구조

01 과세원칙 및 범위

과세 적용 시점 및 기본 원칙

한국

- 2027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해 두 차례 유예를 거쳐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를 위해 본격적인 과세가 이뤄질 예정

두바이

- 현재까지 **소득세·법인세·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도 지난해 11월부터 암호화폐 거래 및 관리 서비스에 대해 **면제**

과세 범위 및 소득 분류

한국

- 모든 가상자산(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 NFT 등 포함)의 양도·대여·교환으로 발생하는 이익 외 스테이킹, 에어드롭, 디파이 수익 등도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

두바이

- 모든 개인 및 프리존(자유무역지역) 내 법인의 암호화폐 매매, 스테이킹, NFT 등 관련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님**.
- 본토(Mainland) 법인도 연간 37만 5천 AED(한화 약 1억 3천만 원)이하 과세 소득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함.

한국 vs 두바이 : 암호화폐 세제구조

02 서울, 공제, 신고·거래내역 제출 의무

한국

- 연간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투자자가 한 해 동안 총 가상자산에서 얻은 소득 전체 금액에서 250만 원을 기본공제금액으로 차감 후, 초과분에 대해서 **22% 기타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함.
- 또한, **투자자는 직접** 그 해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까지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신고 의무가 발생**되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투자자의 **연간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투자자와 가상자산 거래소 모두 신고·제출의 의무가 함께 부여됨.

두바이

- 암호화폐 관련 모든 **개인 소득은 세율 0%**이며 **법인세도 사실상 면제**로 신고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나 일정금액(연 37만 5천 AED)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 9%를 적용 받음.
- 또한, 암호화폐의 거래·교환 등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전면 면제되어 최종 **‘소득세 0%, 법인세 0%, 부가가치세 0%’**의 세금체계를 갖추고 있음.

한국 vs 두바이 : 암호화폐 세제구조

03 암호화폐 사업자 투자시 배당소득세 과세

한국

-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 사업자에 투자해 배당금을 분배받을 경우, 투자 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음과 같이 달라짐.
 - **개인 투자자가 배당받은 경우** :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15.4% 원천징수**되며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함.
 - **법인 투자자가 배당받은 경우** : 배당금은 ‘익금’에 해당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과세**됨.

두바이

- 두바이에 소재한 암호화폐 사업자에 출자하여 배당금을 받을 경우 투자자가 개인이든 내국 법인이든 **두바이 현지에서는 배당금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
- 즉, 두바이 현지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투자하여 암호화폐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이더라도 배당금에 대해 이중과세나 원천징수 부담이 없어**, 실제 분배 받은 배당금 전액을 송금하거나 재투자할 수 있음.



한국 vs 두바이 : 암호화폐 세제구조

04 암호화폐 상속 및 증여

한국

- 한국 세법상 피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일 경우, 전 세계에 위치한 모든 재산 및 소득에 대해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 발생하며 암호화폐의 경우 **상속·증여일 전후 각 1개월(총 2개월) 동안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의 일평균 환산가액으로 평가**
-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의해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 받으며,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함.

구분	과세대상	과세표준 평가방법	신고납부기한
상속세	국내외 모든 암호화폐 (거주자 기준: 피상속인/ 수증자)	상속일 전후 1개월 일평균가액 (국세청 고시 거래소)	사망일 속한 달 말일+6개월
증여세			증여일 속한 달 말일+6개월

두바이

- 두바이 현지의 세법에 따라 암호화폐를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하더라도 **현지 세법상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즉, 두바이에서 암호화폐를 상속·증여 받을 때는 현지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없음.
- 단, 상속인 또는 수증인이 **세법상 한국 거주자라면** 해당 암호화폐도 **한국세법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별도로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됨.

한국 vs 두바이 : 암호화폐 관련 세제혜택

구분		한국	두바이
암호화폐 투자시	개인 소득세	2027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세로 과세	소득세 없음
	법인세	법인세율 9%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리존 : 면제 • 본토 : 연 과세소득 375,000 AED 초과시 9% 법인세율 적용
신고·납부 의무		홈택스 직접 신고 거래소 연간 보고의무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개인 및 프리존 법인세 신고의무 없음 (단, 본토 법인은 법인세 신고 의무 발생 가능)
암호화폐 사업자 투자시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시)	원천징수세 없음
상속·증여세		상속·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증여세 없음
부가가치세		암호화폐 서비스에 대해 10% 일괄 부과	부가가치세 면제

두바이 세제 혜택의 한계

-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 판정의 중요성

- 두바이는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는 자동적으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 임을 의미하지 않음. 한국의 ‘비거주자’ 판정은 국내 주소 또는 거소가 존재하지 않고, 183일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하며, 생활중심지 및 자산의 국외 이전 등 별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따라서, **두바이에서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어 현지의 세제혜택을 적용 받더라도 한국 세법상 여전히 ‘거주자’ 로 분류된다면** 한국 정부는 전 세계 모든 소득과 재산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소득과 재산에 대해 **국내세법(한국세법)에 따라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함.**
- 즉, 두바이의 세제 적용을 고려할 경우 두바이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단 요건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①~⑤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 요건

- ① 국내 주소 부재**
 - 국내에 생활의 실질적 근거지가 없어야 함.
 - 여기서 실질적 근거지란 주민등록상의 기록과 무관하게 실제로 생활의 중심지가 국내에 있다고 인정되면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봄.
- ② 국내 거소기간 183일 미만**
 - 1과세기간(1월1일~12월31일)동안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 미만이어야 함.
 - 2026년부터는 183일 기간이 미달하더라도 직전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두 과세기간에 걸쳐 연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라면 거주자로 간주됨.
- ③ 국외 중심 생활 근거 확립**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외국 국적 취득 또는 외국 법령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하여 생활 근거지가 명백히 해외에 있어야 함.
- ④ 가족·자산의 해외 이전**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주요 자산(부동산·사업체 등)의 중심이 해외로 이전되어야 함.
- ⑤ 실질적 경제 활동 및 소득 발생지**
 - 소득의 원천(급여·사업소득 등)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은 일시적·부수적 수준에 그쳐야 함.

한국 – UAE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를 위한 Tie-Breaker 규정

- 거주와 경제활동 경계가 국제적으로 다양해진 오늘, 한 개인이 한국에서 일정 기간이상 체류하며 소득을 올리고, 동시에 두바이에서도 장기 거주 조건을 충족해 소득을 올린다면, **한국과 두바이 양국의 세법상 거주자(이중거주자)**로 판정되어 동일한 소득에 대해 **각국이 납세의무를 동시에 요구할 수**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DTAA)’ 중 Tie-Breaker 규정**에 따라 **한 국가를 그 사람의 ‘거주지국’**으로 최종 특정, 해당 국가내 납세의무만 집행하게 되며, 또 다른 국가는 비거주자로 인정되어 과세권이 배제되는 것이 원칙

Tie Breaker 규정 적용

[1단계] 한국-UAE조세조약 제 4조 3항, Tie-Breaker 규정 적용

- 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봄.
- ②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결정할 수 없거나 어느 국가에도 항구적 주거가 없는 경우,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계약국(조약 체결국)의 거주자로 봄.
- ③ 국적(Nationality): 양 계약국 안에 일상적 거소를 가지고 있거나 어느 국가에서도 일상적 거소가 없는 경우, 국민인 계약국의 거주자로 봄.
- ④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위의 기준으로 지위가 결정될 수 없는 경우, 양 계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

[2단계] 거주지국 결정 후 과세

- ① **Tie-Breaker 규정에 따라 두바이 거주자로 결정되면 두바이 현지의 세제혜택을 적용**받고 한국에서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음.
- ② 반대로, 한국 거주자로 결정되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하되, 두바이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하여 이중과세 조정

실제 적용 사례

초기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개인이 한국 내에 주소 가족을 두고 한국 세법상 거주 요건을 충족 • 동시에 두바이에서도 장기 체류, 사업자 개설 등으로 두바이 세법상 거주자 증명서 취득
이중 거주자 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모두에서 거주자 인정받아 한국과 두바이 모두 세법상 거주자 지위 발생
Tie-Breaker 규정 적용 후 이중 거주자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UAE 이중과세방지협상 Tie-Breaker 규정에 따라 실질적 관리장소가 두바이로 판정되어 이중 거주자 해소됨.

두바이 현지 세법만 적용 (최종 세부담 0%)



필수안내사항

- 본 자료는 일반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 본 자료는 한화생명보험(주)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한화생명보험(주)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일반금융소비자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식재산권은 한화생명보험(주)에 있으므로 한화생명보험(주)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